

## 언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### □ 세부유형 : 언어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언어장애유형, 원인(진단명) 및 진단소견을 기재(말더듬, 자음정확도, 표현언어지수, 수용언어지수가 포함되어야 함)
2. 검사결과지	<p><b>[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창성장애 : 말더듬 심도검사,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결과지 중 1개</li> <li>- 조음장애 : 우리말 조음-운음검사 결과지(U-TAP), 아동용 발음검사(APAC) 권장,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제출 [* 낱말 및 문장 자음정확도 결과 모두 표시]</li> <li>- 실어증 :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(K-WAB) 결과지</li> <li>- 발달성 언어장애: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척도검사(PRES), 영유아언어발달검사(SELSI) 결과지 중 1개 제출 ※ 필요시 그림어휘력검사, 학령기아동언어검사(LSSC), 수용·표현어휘력검사(REVT)등 검사결과지 중 연령에 적합한 검사 1개 제출</li> <li>- 음성장애 : 발생(음도, 강도, 음질)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 언어검사 결과지(MDVP, CSL 등) ※ 언어치료 전·후로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제출 ※ 언어장애의 원인이 <b>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</b>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<b>뇌영상 자료</b>(MRI : 자기공명영상촬영, CT : 전산화단층촬영) 중 보유한 자료 추가 제출</li> </ul>
3. 진료기록지	- 언어장애 관련하여 치료받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 ※ 후두를 완전히 적출한 경우 <b>수술기록지</b> 만 제출(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당연 제출)

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

#### 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

-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,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과, 소아청소년과(신경분과) 전문의
-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
- 의료기관의 치과(구강악안면외과),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(구강악안면외과)

#### 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/ 말더듬(SSl: 아동 41%ile 이상, 성인 24%ile 이상, P-FA: 41%ile 이상)/ 자음정확도 75% 이하/수용언어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